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보

제567호

2007년 2월 27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1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95호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16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야 하며, 당연직 고문 외에 3명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1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동조 제4항 제1호중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구의회의원 “1명”을 “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인천광역시서구(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경제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구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
5. 구의 노사정 담당국장
6. 구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

④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은 해당 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와 공무원,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구,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해당기관, 단체에 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의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 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3호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2월 26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과 구민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급기관·단체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를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문 안)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 ○ ○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

● 회 의 명 : 제 회 의회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부의안건 :

표 창 장	훈 격	선정인원	추천인원

● 의 결 :

훈 격	소 속	직위(급)	성 명	의 결	의결 사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table>
<tr><td>⑴성 명</td><td colspan="3">(한자원명)</td></tr>
<tr><td rowspan="2">⑵주민등록 번 호</td><td rowspan="2"></td><td colspan="2">⑶군번 (군인인 경우)</td></tr>
<tr><td colspan="2"></td></tr>
<tr><td>⑷본 적</td><td colspan="3"></td></tr>
<tr><td>⑸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⑹직 업</td><td colspan="2">⑺ 소 속</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⑻직 위</td><td>⑼ 등 급 (직급.계급)</td><td colspan="2">⑽ 근무(수공)기간</td></tr>
<tr><td></td><td></td><td>년</td><td>월</td></tr>
<tr><td colspan="2">⑾ 공적요지 (50자 내외)</td><td>⑿ 공적 분야 코드</td><td></td></tr>
<tr><td>⒀추천훈격</td><td></td><td>⒁추천순위</td><td></td></tr>
<tr><td colspan="4">조 사 자</td></tr>
<tr><td>⒂소 속</td><td></td><td>⒃직 위</td><td></td></tr>
<tr><td>⒄직 급</td><td></td><td>⒅성 명</td><td></td></tr>
<tr><td colspan="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td></tr>
</table>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9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석남완충녹지 조성공사(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석남완충녹지(2단계) 조성공사
2. **기 업 자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석남완충녹지(2단계) 50,757㎡
5. **열 람 기 간 :** 2007. 2. 26. ~ 2007. 3. 12.
6.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5905)
7.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석남동 219-1번지 일원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공사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및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석남1	219-1	답	1,512	1,512	장경현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2			
석남1	219-18	답	3,541	3,541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1	219-48	장	81	81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물 건 조 서

사업명 : 석남동 219-1번지 일원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공사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및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석남동	219-1	바닥	콘크리트	1식	장경현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2			
석남동	219-1	버드나무	R50	2주	장경현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2			
석남동	219-1	담장	블록	54m	장경현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2			
석남동	219-1	대문	밖 정문10*6	1조	장경현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2			
석남동	219-18	대문	철재 6.0M	1조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	담장	함석 H=3.2	38m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	담장	블록 H=2.4	20m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	아카시나무 외1종	R6	3주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	바닥	콘크리트	1식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	콤프레샤	5hp,10hp	2식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48	공장	천막,파이프 16.8×6.7	112.56㎡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48	공장	스레트(15.0×10) +(10×3.0)	180.0㎡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48	냉동고	냉장고류 4.3×2.0	1식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48	버드나무		1주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석남동	219-18,48	냉동고	냉장고류 6.0×2.0	1식	김영완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22 한신휴아파트105-1701			

영 업 이 전 비 조 서

사업명 : 석남동 219-1번지 일원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공사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및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석남동	219-34, 대신기계	이전비		1식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대문	철재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선반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크레인	1ton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탁상드릴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대패기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용접기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간판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절단기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고정절단기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콤푸레샤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양수기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전기로	철재1500×1500×1700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진열대 및 자재다이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기계다이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기타공구 및 잡기비품 등		1식	오상택	인천시 서구 검암동535-2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2-402				
석남동	219-16, 총인기계	이전비		1식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크레인	2.8톤, 1톤,1톤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간판	3×1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철판조방	25㎡,28㎡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도장부스	20㎡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기계다이	30㎡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기타공구 및 잡기비품 등			임성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514-1 수정아파트 b-209			